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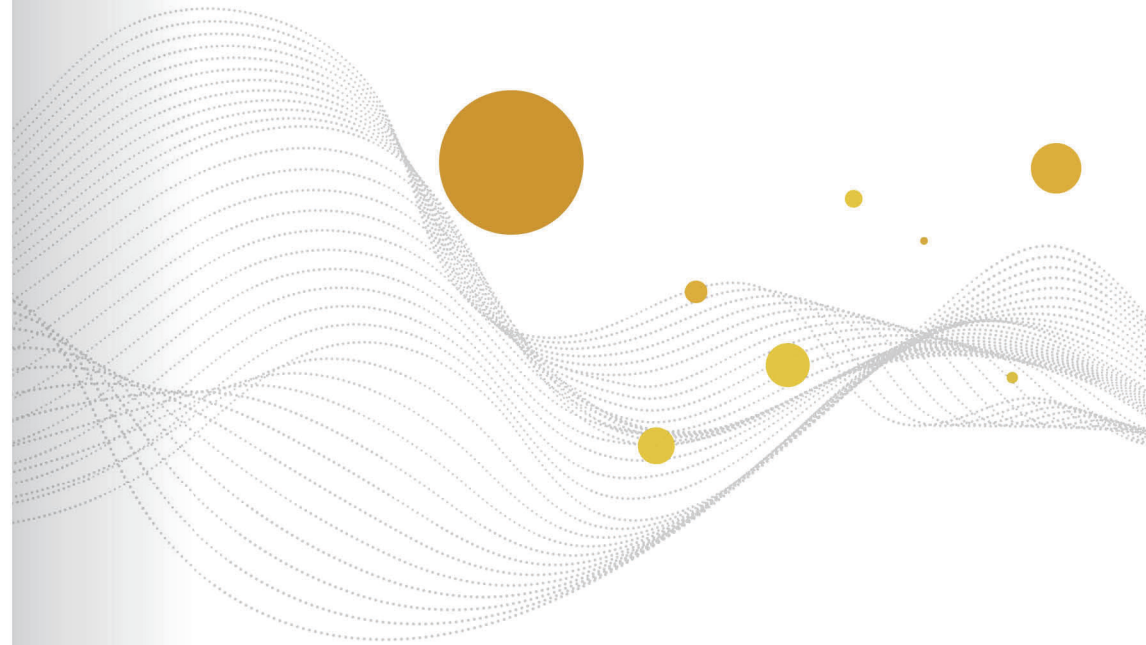
2020
법학전문대학원

편
람



2020
법학전문대학원

편
람



Contents

03	교육목표
04	학사일정
06	연혁
07	기구
08	교수진
09	교수소개
34	학칙
48	시행세칙
74	교과과정표
78	학사행정조직
	행정실
	학생지도센터
	대외협력센터
	리걸클리닉센터
82	관련조직
	법학연구소
	법학전문도서관
88	캠퍼스안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그 **응용방법 교수·연구**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법률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지도적인 법조인 양성

올바른 가치관과 풍부한 교양 및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조세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

조세법 분야의 법률문제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

교육목적

교육목표

특성화목표

학사 일정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일정표

월	일(요일)	학사내용
3 Mar	16(월)	1학기 개강
	16(월)~20(금)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4 Apr	7(화)~9(목)	수강신청 취소
	10(금)	수업일수 1/4(일반휴학 만기)
5 May	1(금)	개교기념일
	6(수)	수업일수 2/4
6 Jun	1(월)	수업일수 3/4
	22(월)~26(금)	기말시험
	27(토)	여름방학
7 Jul	6(월)	성적제출 마감
	8(수)	성적 열람
	8(수)~13(월)	1학기 성적정정
	20(월)~24(금)	2학기 복학신청
	20(월)~23(목)	2학기 장바구니 수강신청
	27(월)~31(금)	2학기 수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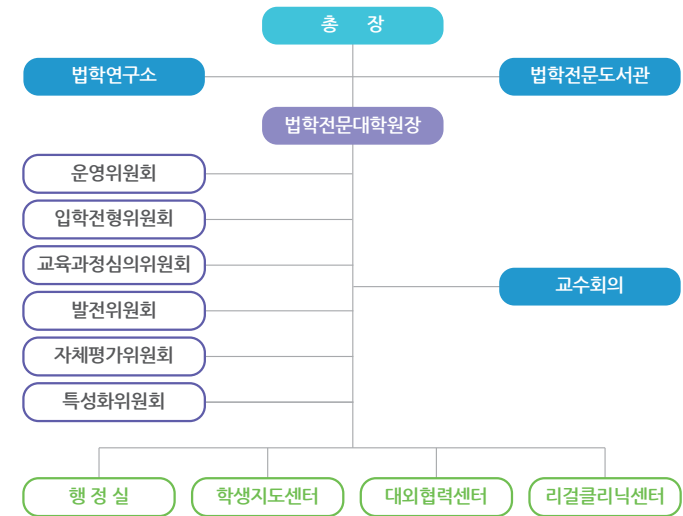
월	일(요일)	학사내용
8 Aug	21(금)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4(월)~28(금)	2학기 휴학신청, 등록금 납부
	25(화)	2학기 개강
	25(화)~31(월)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9 Sep	17(목)~21(월)	수강과목 취소
	28(월)	수업일수 1/4(일반휴학 만기)(대학동일)
10 Oct	28(수)	수업일수 2/4(대학동일)
11 Nov	17(화)~23(월)	보강주간(대학동일)
	26(목)	수업일수 3/4(대학동일)
12 Dec	8(화)~14(월)	기말시험
	16(수)	겨울방학
	31(목)	성적제출 마감(대학동일)
21. 1 Jan	18(월)~22(금)	1학기 복학 신청
	18(월)~22(금)	1학기 기숙사 신청
	25(월)~28(목)	1학기 장바구니 수강신청
21. 2 Feb	4(목)~5(금)17:00	1학기 수강신청(신입생)
	8(월)~9(화)	1학기 수강신청(복학생, 재학생)
	22(월)~26(금)	1학기 휴학신청, 등록금 납부
	22(월)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학사일정은 학교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혁

2004	08. 18 법학관 건립계획 수립 (총장방침 제 322호)
2007	05. 01 법학전문대학원 추진단 구성 07. 03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1.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12. 01 예비인가 현지조사 준비단 구성
2009	01. 15 초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구상진 교수 취임 0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설치 01. 20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공고 02. 13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정 03. 02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 및 2009학년도 입학식
2011	03. 02 2011학년도 입학식 09.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법률상담실) 설치
2013	01. 21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인증 02. 22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02. 28 2013학년도 입학식
2015	02. 24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03. 02 2015학년도 입학식 10. 20 2015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제출 11. 06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
2017	02. 22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 02. 28 2017학년도 입학식 10. 13 2017 자기점검보고서 발간
2019	02. 22 2018학년도 학위수여식 03. 04 2019학년도 입학식 05. 10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수 및 기념식
2005	09.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보고서 작성
2008	01. 07 법학교육위원회 현지조사단 방문 및 평가 02. 04 예비인가 03. 01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준비위원회 구성 05. 27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발족 07. 04 설치인가 최종 신청서 제출 08. 29 법학전문대학원 본인가 (입학정원 50명) 10. 13 법학관 및 법학전문도서관 개관
2010	02. 11 2009 자체평가연차보고서 발간 03. 02 2010학년도 입학식 03. 법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센터 설치 04. 08 제2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문영식 교수 취임 12. 09 2010 자체평가보고서 발간
2012	02. 22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 02. 29 2012학년도 입학식 08. 01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영규 교수 취임 08. 20 2012 자기점검보고서 발간 및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제출
2014	02. 21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02. 28 2014학년도 입학식 08. 01 제4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교수님 취임
2016	02. 22 2015학년도 학위수여식 02. 26 2016학년도 입학식 09. 01 제5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병호 교수님 취임
2018	02. 22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 02. 28 2018학년도 입학식 09. 01 제6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대환 교수님 취임
2020	02. 21 2019학년도 학위수여식 03. 02 2020학년도 입학식

기구



1. 법학전문대학원 (5065) 원장 : 김대환
2. 운영위원회 위원장 : 김대환 / 위원 : 정영수, 문상덕, 경건, 김호기, 신권철, 김희균
3.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 : 경건 / 위원 : 김희균, 문상덕, 이상경, 이창위, 정영수, 최은희, 임정하, 양인준
4.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 김대환 / 위원 : 정영수, 문상덕, 신권철, 김희균, 김호기
5. 행정실 (5068~70) 부원장 : 정영수 / 예산·사무담당 : 박화진 / 교무 학생 담당 : 신성희 / 입학담당 : 손나리
6. 학생지도센터 (5073~4) 센터장 : 김호기 / 전담직원 : 조혜숙
7. 대외협력센터 (5076) 센터장 : 김희균 / 전담직원 : 이주용
8. 리걸클리닉센터 (5076) 센터장 : 신권철 / 전담직원 : 이주용
9. 법학연구소 (5330) 소장 : 문상덕 / 기획연구부장 : 임정하
조세법센터장 : 양인준 / 도시와법센터장 : 임정하 / 시민법교육센터장 : 김호기
10. 법학전문도서관 (6565~7) 관장 : 정영수 / 법학자료팀장 : 최수연 / 법학자료팀 : 김소희

교수진

연 번	성 명	직급	내선번호	E-Mail
1	강정혜	교수	5090	chk@uos.ac.kr
2	경 건	교수	5089	kyoung@uos.ac.kr
3	구대환	교수	5092	kdh@uos.ac.kr
4	권재문	교수	5087	kulpianus@uos.ac.kr
5	김대원	교수	5095	dwkim@uos.ac.kr
6	김대환	교수	5096	daiwhan@uos.ac.kr
7	김호기	교수	5097	querdenken@uos.ac.kr
8	김희균	교수	5102	menton@uos.ac.kr
9	노상헌	교수	5098	shroh@uos.ac.kr
10	문상덕	교수	5093	sdmun@uos.ac.kr
11	박세환	조교수	5084	25shpark@uos.ac.kr
12	박영규	교수	5082	nosmpark@uos.ac.kr
13	성중모	부교수	5100	dschungmo@uos.ac.kr
14	신권철	교수	5103	shinkc@uos.ac.kr
15	양인준	부교수	5043	ijyang@uos.ac.kr
16	이상경	교수	5107	sky@uos.ac.kr
17	이창위	교수	5094	chalee@uos.ac.kr
18	임정하	부교수	5106	limjh@uos.ac.kr
19	장경원	교수	5105	jang0503@uos.ac.kr
20	장영철	교수	5091	changyc@uos.ac.kr
21	정병호	교수	5088	servius@uos.ac.kr
22	정영수	교수	5108	jys1972@uos.ac.kr
23	최은희	교수	5085	ehchoi427@uos.ac.kr
24	최창귀	교수	5086	allfour@uos.ac.kr

교수소개



강정혜

연구분야 상법, 국제거래법

전화번호 02-6490-5090

연구실 법학관 504호

E-mail chk@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9 ~ 2000 미국 U.C.버클리대학 법학석사(LL.M)
1982. 03 ~ 1986.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05. 0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07 ~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2016. 09 ~ 2018. 08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2015. 01 ~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2013. 07 ~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
2012, 2016 제1회, 제5회 변호사시험위원
2011. 04 ~ 2013. 04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 03 ~ 2016. 09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2008 법무부 상법 개정 위원
2007. 08 ~ 2010. 07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07 제49회 사법시험 1, 2차 시험위원
2006. 05 ~ 2008. 0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6. 03 ~ 2008. 0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
2006. 03 ~ 2008. 02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05. 08 ~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9 ~ 2002 (주)여성신문사 사외이사
1996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자문변호사
1992. 04 ~ 1999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자문변호사
1992. 03 ~ 2005. 08 법무법인 광장(Lee & Ko) 변호사
(2001~2005 파트너 변호사)
1990. 03 ~ 1992. 02 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경건

연구분야 행정법, 정보(공)법

전화번호 02-6490-5089

연구실 법학관 630호

E-mail kyoung@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1. 03~1998.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행정법)
 1986. 03~1988.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행정법)
 1982. 03~1986.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1999. 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08 ~ 2016. 0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13. 09 ~ 2014. 0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장
 2009. 08 ~ 2010. 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학과장, 법학부장
 2007. 07 ~ 2009. 0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기획연구부장
 2005. 03 ~ 2007. 04 서울시립대학교 교무부처장
 2002. 02 ~ 2004. 0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장
 2007. 12 ~ 2011. 0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2007. 09 ~ 2010. 09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2004. 08 ~ 2008. 08 정보공개위원회(대통령소속) 위원
 2004. 11 ~ 2008. 02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전문위원
 1999 ~ 현재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 회원, 임원



구대환

연구분야 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과 법

전화번호 02-6490-5092

연구실 법학관 629호

E-mail kdh@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00.9 ~ 2003.1 영국 셰필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2000.9 ~ 2001.6 영국 셰필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과정
 1977.2 ~ 1981.2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07.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1 ~ 현재 캐나다과학교육센터, Journal of Politics and Law(JPL) Reviewer
 2013.1 ~ 현재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발행 저널 "ILC" Reviewer
 2012.9 ~ 현재 인도 국립과학정보통신자원협회 발행 저널 "JIPR" Reviewer
 2006.6 ~ 2006.9 일본지적재산권연구소, 초빙연구원
 2004.1 ~ 2004.2 싱가포르국립대학, 초빙교수
 2003.9.1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993 건축기술사 자격 취득
 1990 변리사 자격 취득
 1981 ~ 2003 특허청 심사관, 심판관, 변리사 출제위원
 1980 제 16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권재문

연구분야 민법

전화번호 02-6490-5087

연구실 법학관 610호

E-mail kulpianus@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02 ~ 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7 ~ 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9 ~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04 ~ 2006 변호사 개업
2006 ~ 2019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



김대원

연구분야 국제법

전화번호 02-6490-5095

연구실 법학관 502호

E-mail dwkim@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02 ~ 2004 스위스 Berne대학(법학박사, Dr.lus)
1999 ~ 2002 독일 Konstanz대학 박사과정 수료
1997 ~ 1998 영국 Edinburgh대학 법학석사(LL.M)
1987 ~ 1989 고려대학교 일반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83 ~ 198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2005. 02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 201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02 ~ 2003 World Trade Institute(스위스) 연구원



김대환

연구분야 헌법

전화번호 02-6490-5096

연구실 법학관 506호

E-mail daiwhan@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03 ~ 2004 독일 괴팅엔대학교 박사후 과정
1995 ~ 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8 ~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4 ~ 198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1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5 ~ 2016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
2011 ~ 2012 서울시립대학교 언론사 주간
20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 200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5 ~ 2007 경성대학교 조교수
2003 ~ 2004 독일 괴팅엔(Goettingen)대학교 방문교수
1999 ~ 2004 탐라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1995 ~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헌법)
서울시립대, 서울산업대, 홍익대 강사
한국공법학회 고문(현), 한국공법학회 회장(역임)
한국교육법학회 부회장 (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 위원 (역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역임)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강화포럼 위원 (역임)
서울가정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역임)
동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역임)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 위원회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김호기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기술법, 법철학

전화번호 02-6490-5097

연구실 법학관 507호

E-mail querdenken@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01. 10 ~ 2005. 12 독일민헨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0. 03 ~ 2001.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1996. 03 ~ 2000. 02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 석사(형사법 전공)
1991. 03 ~ 1996. 02 서울대학교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07. 0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김희균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전화번호 02-6490-5102

연구실 법학관 612호

E-mail menton@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86. 03 ~ 1990.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1996. 09 ~ 1997. 09 파리8대학 문학부(문학사)
 1997. 09 ~ 1998. 10 파리8대학 문학부(문학석사)
 2000. 08 ~ 2002. 08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법학석사)
 2002. 09 ~ 2005. 03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법학박사)

• 주요 경력사항

2002. 10 ~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05. 03 ~ 2010. 08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0.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노상헌

연구분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전화번호 02-6490-5098

연구실 법학관 5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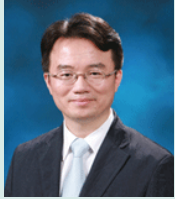
E-mail shroh@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7. 04 ~ 2000. 03 (일본) 東京都立大學 大學院 (법학박사)
 1995. 04 ~ 1997. 03 (일본) 東京都立大學 大學院 (법학석사)
 1990. 03 ~ 1992. 02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86. 03 ~ 1990. 0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07. 10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 03 ~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20. 01 ~ 현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2019. 03 ~ 현재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2015. 01 ~ 현재 한국노동법학회 부회장
 2012. 01 ~ 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2016. 02 ~ 2017. 0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2013. 09 ~ 2015. 0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2011. 07 ~ 2012. 01 미국 Indiana University 방문교수
 2005. 09 ~ 2007. 09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3. 03 ~ 2005. 09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0. 04 ~ 2003. 03 (일본)동경도립대학 법학부 조교



문상덕

연구분야 행정법, 지방자치법

전화번호 02-6490-5093

연구실 법학관 505호

E-mail sdmun@uos.ac.kr

• 주요 학력사항

- 1992. 03 ~ 2000.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행정법)
- 1990. 03 ~ 1992.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
- 1985. 03 ~ 1990.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 2007. 0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7. 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2019. 02 ~ 현재 법제처 법제자문관
- 2019. 01 ~ 현재 (사)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2018. 03 ~ 2020. 0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8. 01 ~ 2018. 12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2017. 12 ~ 현재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2015. 01 ~ 2015. 12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15. 01 ~ 2015. 1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제도혁신단 위원
- 2015. 01 ~ 2015. 12 (사)한국국가법학회 부회장
- 2005. 05 ~ 2014. 12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기획·출판·연구·총무·국제이사
- 2012. 03 ~ 2013. 02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 자문위원
- 2012. 06 ~ 2014. 05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
- 2011. 03 ~ 2013. 02 법제처 국민법제관
- 2011. 02 ~ 2013. 02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 2011. 01 ~ 2012. 12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총무이사
- 2009. 07 ~ 2010. 06 (사)한국공법학회 재무이사
- 2009. 01 ~ 2011. 12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기획이사
- 2008. 12 ~ 2010. 12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실무위원
- 2008. 01 ~ 2010. 12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도시와 법센터장
- 2000. 03 ~ 2007. 08 한림대학교 법학행정학부 조교수·부교수(행정법)
- 1999. 03 ~ 2000.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행정법)
- 1996. 02 ~ 1997. 0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박세환

연구분야 상법, 경제법

전화번호 02-6490-5084

연구실 법학관 608호

E-mail 25shpark@uos.ac.kr

• 주요 학력사항

- 2014. 09 ~ 2017. 09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법학박사(상법)
- 2005. 03 ~ 2010. 02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수료
- 1996. 03 ~ 2001. 02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 2020. 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2018. 09 ~ 2020. 03 서울대 법전문 비전임교원, 서울대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 선임연구원
- 2017. 07 프랑스 경쟁위원회(위원장실)
- 2014. 09 ~ 2017. 09 국외훈련파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박사과정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과, 경쟁과, 소비자정책과, 송무담당관실)
- 2010. 03 ~ 2018. 09 법무법인 흥정 변호사(기업자문, 공정거래) 사법연수원 수료(군복무)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9. 02 ~ 2010. 02
- 2005. 03 ~ 2009. 01
- 2004



박영규

연구분야 민법

전화번호 02-6490-5082

연구실 법학관 6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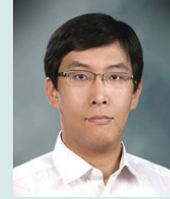
E-mail nosmpark@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2. 01 독일 괴팅겐 대 법학박사
1985. 02 서울대 법학석사
1983. 02 서울대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1993. 01 ~ 2009. 0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9. 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위원 역임
2016. 07 ~ 2017. 02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성중모

연구분야 민법

전화번호 02-6490-5100

연구실 법학관 614호

E-mail dschungmo@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10. 05 독일 본(Bonn)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1999.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4. 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13.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2003. 04 ~ 2005. 05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교
법사학연구소 로마법 부문 연구원
2010. 08 ~ 2010. 12 법무부 법무연구관
2010. 05 ~ 현재 한국민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 회원
2014. 01 ~ 현재 한국법사학회 편집이사



신권철

연구분야 민법, 정보권법, 인신보호법, 민사실무

전화번호 02-6490-5103

연구실 법학관 616호

E-mail shinkc@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1. 03 ~ 1996.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6. 03 ~ 2005. 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논문 :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2009. 03 ~ 2012.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논문 :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배제에서 통합으로)

• 주요 경력사항

2015.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 09 ~ 2015. 0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 02 ~ 2010. 08 서울고등법원 판사(노동전담부)
 2006. 02 ~ 2010. 02 흥성지원, 경주지원 각 판사 및 북경대학 연수
 2004. 02 ~ 2006. 02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의료전담)
 2002. 04 ~ 2004. 0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1999. 04 ~ 2002. 03 육군 제15사단 및 병무청 법무관
 1997. 03 ~ 1999. 01 사법연수원 수료(연수원 28기)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위원



양인준

연구분야 세법

전화번호 02-6490-5043

연구실 21세기관 619호

E-mail ijyang@uos.ac.kr

• 주요 학력사항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법학사)
 2007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국제적 이중비과세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합병 분할시 세무요소 승계에 관한 연구”)

• 주요 경력사항

2011. 09 ~ 2015. 08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2015.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2015. 03 ~ 2018. 02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장/부학장
 2013. 04 ~ 2015. 09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입학부처장
 2018. 03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9. 05 ~ 현재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사의위원회 위원
 2017. 11 ~ 2019. 11 기획재정부 국제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9. 10 ~ 현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2019. 06 ~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6. 06 ~ 2018. 0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7. 01 ~ 2019. 01 관세청 관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5. 07 ~ 2019. 06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1. 02 ~ 2011. 08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세법연구센터)
 2000. 10 ~ 2004. 01 공군장교
 2011 ~ 2013 한국세법학회 편집이사
 2019 ~ 2020 한국세법학회 편집이사
 2017 ~ 2018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
 2011 ~ 현재 한국국제조세학회 편집이사
 2016 한국세무학회 국제조세연구위원장
 2017 한국세무학회 정책이사
 2019 조세정책연구위원장
 2018 ~ 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이사
 국가공무원시험, 법원직공무원시험, 지방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이상경

연구분야 헌법

전화번호 02-6490-5107

연구실 법학관 509호

E-mail sky@uos.ac.kr

• 주요 학력사항

- 2002. 08 ~ 2007. 08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S.D.(법학박사)
- 2005. 01 ~ 2007. 05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 2001. 08 ~ 2002. 05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1989. 03 ~ 1991. 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1985. 03 ~ 1989.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 2012.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 04 ~ 2018. 0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 2012. 09 ~ 2015. 0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외협력센터장
- 2013. 04 ~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2013. 05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회 위원
- 2013. 04 ~ 현재 국회법률도서관 자문위원
- 2019. 01 ~ 현재 한국공법학회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회장
- 2018. 01 ~ 현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2019. 01 ~ 현재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부회장
- 2020. 01 ~ 현재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2020. 01 ~ 현재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 2020. 01 ~ 현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 2018. 01 ~ 2018.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2017. 01 ~ 2017. 06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2015. 01 ~ 2016. 12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2016. 03 ~ 2017. 12 동대문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 2015. 04 ~ 2016. 1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 2008. 03 ~ 2012. 08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7. 09 ~ 2008. 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2003. 06 ~ 2004. 08 독일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초빙학자



이창위

연구분야 국제법

전화번호 02-6490-5094

연구실 법학관 602호

E-mail chalee@uos.ac.kr

• 주요 학력사항

- 1992. 03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1986. 04 일본 문부성 장학생
- 1985. 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1983. 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 2007. 0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 01 ~ 2017. 02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 2016. 02 ~ 2018. 02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 2013. 01 ~ 2013. 12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 2006. 03 ~ 2008. 02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회장
- 2003. 03 ~ 현재 외교통상부 국제법자문위원
- 1996. 03 ~ 2007. 08 대전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 1990. 02 ~ 1993. 03 씨티은행 법규부 부장



임정하

연구분야 상법, 증권·금융규제법

전화번호 02-6490-5106

연구실 법학관 611호

E-mail limjh@uos.ac.kr

• 주요 학력사항

2011. 09 ~ 2013. 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
(금융규제법 전공)
2001. 08 ~ 2002. 05 UC Berkeley Law School LL.M
(법학석사, 회사법전공)
1989. 03 ~ 1993.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주요 경력사항

(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채권정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위원회 법령평가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공익이사

(현) 증권법학회 연구이사, 상사판례학회 연구이사, 유통법학회 연구이사, 기업법학회 재무이사, 금융소비자학회 운영이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및 기록물평가 심의회 심의위원, 법무법인 충경 변호사



장경원

연구분야 행정법, 경제행정법, 방송통신법, IT법

전화번호 02-6490-5105

연구실 법학관 615호

E-mail jang0503@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3.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9.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전공)
2001. 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2005. 04 독일 HAMBURG 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 주요 경력사항

2010.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와 법 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사) 총무이사/기획이사/연구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사) 총무간사/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사) 총무간사/연구위원/섭외이사
국가보훈처 정보공개심의위원
독일 Hamburg 대학교 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Stipendiat Friedrich-Naumann-Stiftung
Fulbright Scholar(U.C. Berkeley Law School, 2016-2017)
국가시험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각급 공무원시험/국가자격시험)



장영철

연구분야 헌법

전화번호 02-6490-5091

연구실 법학관 613호

E-mail changyc@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8. 02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1989. 02	연세대 법학석사
1987. 02	연세대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현)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운영위원(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전)
 강남구 세정자문위원(전)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전)



정병호

연구분야 민법

전화번호 02-6490-5088

연구실 법학관 6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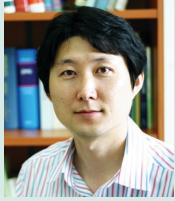
E-mail servius@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85. 02. 2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88. 02. 2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0. 03. 01 ~ 1992. 02. 2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1. 09. 01 ~ 1992. 02. 2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92. 10. 15 ~ 1998. 09. 15	독일 괴팅겐대학교(Georg-August-Universitat Gottingen) 법학부 박사과정; 1998.9.15. 박사과정 최우등 졸업 "summa cum laude" (법학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 제목 "로마법상 소비대차")

• 주요 경력사항

1999. 03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사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007. 01 ~ 현재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회원
2010, 2011, 2012, 2013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2009	변리사 1차 시험 출제위원
2010	세무사 1차 시험 출제위원
2008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2003	행정고시 2차 시험 출제위원
2006. 08 ~ 2006. 07	미국 텍사스 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정영수

연구분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전화번호 02-6490-5108

연구실 법학관 619호

E-mail jys1972@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92. 03 ~ 1997. 02 연세대학교 법학사
1997. 09 ~ 1999. 08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1999. 09 ~ 2005. 02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 주요 경력사항

2012. 09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 09 ~ 2020. 0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법학도서관장
2014. 02 ~ 2019. 0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장,
대외협력센터장
2018. 03 ~ 2020. 0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연구이사
2014. 03 ~ 2016. 0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총무이사
2007. 09 ~ 2012. 08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2000. 04 ~ 2007. 08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최은희

연구분야 민사소송법, 친족상속법

전화번호 02-6490-5085

연구실 법학관 609호

E-mail ehchoi427@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82. 03 ~ 1988. 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3. 03 ~ 1977.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 주요 경력사항

2005. 08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 02 ~ 2009. 08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교수
2004. 05 ~ 2006. 05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0. 10 ~ 2002. 05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999. 05 ~ 2002. 05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1999. 07 ~ 2000. 07 여성특별위원회(현 여성부) 실무위원
1996. 05 ~ 2002. 05 서울 강동구청 고문변호사
1987. 07 ~ 1988. 11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법무실 전문위원
1986. 03 ~ 2002. 06 변호사최은희 법률사무소



최 창 귀

연구분야 노동법, 법조윤리

전화번호 02-6490-5086

연구실 법학관 503호

E-mail allfour@uos.ac.kr

• 주요 학력사항

1982. 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사항

2006. 02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6. 01 ~ 2006. 01 변호사
 1985. 12 사법연수원 제 15기 수료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2009. 01. 19. 규정 제1007호
 개정 2010. 02. 01. 규정 제1079호
 개정 2010. 11. 02. 규정 제1122호
 개정 2011. 01. 20. 규정 제1163호
 개정 2011. 03. 11. 규정 제1181호
 개정 2011. 10. 21. 규정 제1226호
 개정 2011. 12. 30. 규정 제1235호
 개정 2012. 02. 24. 규정 제1240호
 개정 2012. 10. 23. 규정 제1306호
 개정 2014. 04. 14. 규정 제1402호
 개정 2014. 05. 29. 규정 제1443호
 개정 2014. 07. 24. 규정 제1460호
 개정 2015. 11. 06. 규정 제1563호
 개정 2019. 01. 07. 규정 제1801호
 개정 2019. 03. 05. 규정 제1814호
 개정 2019. 05. 20. 규정 제1827호
 개정 2019. 12. 20. 규정 제1876호
 개정 2019. 02. 17. 규정 제18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등교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함으로써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법률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지도적인 법조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24)

제3조(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개정 2012. 2.24)

1. 올바른 가치관과 풍부한 교양 및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개정 2012. 2.24)

2.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개정 2012. 2.24)

3. 조세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개정 2012. 2.24)

제3조의2(특성화목표) 본 대학원은 제3조제3호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특성화 목표로 한다.(신설 2012. 2.24)

1. 조세법 분야 전문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
2. 조세법 분야의 법률문제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

제4조(학위과정) ① 본 대학원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본 대학원에 전문 또는 학술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5조(대학원장)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본 대학원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 대학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부원장) ① 본 대학원에 행정실을 두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본 대학원 소속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4)

- ② 부원장은 본 대학원의 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4)

제7조(교수회의) ① 본 대학원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라 한다)를 두며, 대학원장이 의장이 된다.(2012.10.23)

- ② 교수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2012.10.23)

1. 이 학칙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2012.10.23)
2. 이 학칙의 위임에 의한 규정 또는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의 발의
3.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교수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교수회의가 정한 사항(개정2012.10.23)

- ③ 교수회의는 회의의 목적을 밝히고 대학원장이 소집한다. 재적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3)

- ④ 교수회의는 재적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휴직 또는 국외연구년 교수는 재적교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3)

- ⑤ 부원장은 교수회의의 간사로서 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3., 2014.4.14)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대학원장은 위원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입학전형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입학전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입학전형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공정한 입학전형과 입학전형에 관한 민원의 처리를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대학원 소속교원 이외의 서울시립대학교 (이하 “본교” 라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조(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정심의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대학원장은 위원의 임명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공분야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본 대학원에 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및 특성화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밖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0.23)

제13조(학생지도센터) ① 본 대학원에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센터를 둔다.

② 학생지도센터의 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대외협력센터) ① 본 대학원에 대외협력 및 실습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10. 2. 1)

② 대외협력센터의 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2. 1)

제15조(리걸클리닉센터) ① 본 대학원에 법률임상과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리걸클리닉센터를

둔다.(개정 2010. 2. 1, 2011.10.21)

②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0. 2. 1, 2011.10.21)

제3장 입학

제16조(입학정원) ①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전문 또는 학술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지원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8조(입학전형)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며, 법학지식은 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③ 입학정원의 100분의 7 이상 10 이내의 범위에서 석사학위과정 특별전형으로 제17조 제1항의 지원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선발하며, 구체적 기준은 입학전형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19.05.20.)

제19조(선발비율의 제한) ①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있어서는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있어서는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본교 아닌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제20조(입학전형계획)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비율, 전형요소 및 배점, 구체적 평가방법과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법령과 이 학칙의 범위 내에서 전형시마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계획으로 정한다.

제21조(입학전형계획의 공표) ① 대학원장은 매년 확정된 입학전형계획을 지원예정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입학전형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한 학생선발의 절차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평가방법
3. 특별전형의 대상 및 기준

제22조(입학지원서류 등)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본 대학원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료를 내야 한다.(개정 2020. 2.17.)

② 입학전형 자료는 10년 동안 보관한다.(신설 2020. 2.17.)

제23조(입학 허가, 취소) ① 입학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라도 제17조의 자격이 없거나 제22조의 서류 등을 위조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총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재입학) ① 자퇴하였거나 제적되었던 사람의 재입학은 재입학할 학년의 재학생수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1.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사람
2. 재학연한의 경과로 제적된 사람
3.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사람(개정 2011. 3.11)

제25조(편입학) 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사람의 편입학은 편입학할 학년의 재학생수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형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편입학할 수 없다.

1.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제4장 학사관리

제26조(휴학) ①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영 또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휴학기간은 입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2학기를 넘지 못하며, 통산하여 4학기를 넘지 못한다. 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입영일부터 전역일까지로 하되, 이를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장기질병 또는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장기휴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휴학의 제한) 신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의 경우에도 같다)한 학생은 신입학한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영 또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예정기간이 지나면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휴학예정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휴학 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복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제적)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납입기간 내에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개정 2011. 1.20)
2. 휴학예정기간이 지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
3. 재학연한이 지나도록 수료하지 못한 학생
4. 통산 2회 유급이 되었거나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개정 2011.3.11)
5. 자퇴한 학생

제31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 석사학위과정에는 3년(6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하며, 5년(10학기)을 초과하여 재학하지 못한다.

②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 후 본 대학원에서 수학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적 후 재입학까지의 기간 및 입영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적 후 재입학까지의 기간 및 입영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임신과 출산, 장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

제32조(이수과목) ① 학생이 이수할 교과목, 이수단위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필수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필수과목의 대체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3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구분) ① 학생이 이수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과목에는 다음의 교과목이 포함된다.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의 조사
3.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제3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주에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이수하는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당 이수시간과 학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실무수습과목은 계절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다.(2010.2.1)

제35조(출석) 성적은 한 학기 수업 또는 실습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부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6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계절수업 제외)에 최소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예정학기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얻어 6학점 이상 12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3.11)

②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한 학기에 21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1.3.11., 개정 2011.12.30., 개정 2019.1.7.)

③ 제31조제1항의 수업연한(6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얻어 1학점 이상 6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14.5.29)

제37조(다른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학생이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법학관련 교과목의 학점은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한 학생이 편입학 전에 재학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교내 외 학점교류에 의한 학점인정) ① 학생이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다른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필수과목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재수강) ① 취득한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등급은 A-이하로 부여하여야 하며,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12.30)

② 폐지된 필수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40조(시험) ①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장애인의 경우 시험방법, 시험시간, 시험장소 등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한다.

제41조(성적의 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에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2조(강의평가) 강의의 효율성과 충실성 등을 높이기 위해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3조(학사경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2.2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 경고한다. (개정 2011.3.11., 2014.7.24)

제43조의2(유급) ①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2 이하인 자는 유급된다. (신설 2011.3.11., 개정 2014.7.24)

② 유급된 자가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성적 등급이 Bo 이하인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1. 3.11)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단위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직전 학기와 휴학 직후의 복학 학기를 연속 2개 학기로 본다.(신설 2011.3.11)

제43조의3(학사경고 등의 판정을 위한 평점평균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교과목)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법학 관련 교과목,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사경고 및 유급 여부의 판정을 위한 평점평균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6)

제43조의4(계절수업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산정) 계절수업으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신설 2011.3.11)

제6장 학위수여

제44조(수료, 학위수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이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총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1.10.21., 2019.1.7., 2019.3.5.)

제44조의2(전문인증과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12.20.)

제45조(수료)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수료한다.

1. 재학연한 내에 필수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93학점 이상 취득(개정 2010.11. 2., 개정2019.1.7.)
2. 취득한 학점의 평점평균이 2.3 이상(개정 2011. 3.11)

제45조의2(수료, 학위취득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학생이 수료하지 못하거나 학위취득을 하지 못한 데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 3.11)

- ② 전항의 이의신청 서면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 3.11)
- ③ 대학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신속하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3.11)
- ④ 대학원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전항의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신설 2011. 3.11)
- ⑤ 대학원장이 전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 3.11)

제7장 학생활동과 장학금

제46조(학생활동) ① 학생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자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 ③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학술활동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에게 수업 및 학내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도움을 제공한다.

제48조(지도교수) 학생의 학업과 진로 등에 관하여 상담과 지도를 하기 위해 지도교수를 둔다.

제49조(포상) 특히 모범이 되거나 그 밖에 포상의 대상이 될 만한 학생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① 대학원장은 학칙 등 학교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교내봉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앞서 징계대상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장학금 등) 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에게 상환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어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2조(연구과정) 본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53조(학칙의 개정) ① 대학원장 또는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은 이 학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장은 제안된 개정안에 관한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칙의 개정을 발의한다.(개정 2012.10.23)
- ③ 총장은 발의된 학칙 개정안의 내용과 개정사유를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상위규정의 변동에 따라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학칙 개정안은 총장이 제3항의 공고기간이 지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54조(시행세칙의 제·개정) 대학원장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학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개정2012.10.23)

제55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제1호의 개정내용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0.11.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학칙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의 수료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학칙(2010. 2. 1. 규정 제1079호)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 1.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이 학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0.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같은조 제2항, 제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2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2014학년도 2학기 이후의 성적 평점평균과 2014학년도 1학기 이전의 성적 평점평균을 합산하게 되는 경우의 유급기준은 제4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7.)

이 학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 별지서식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 국문](개정 2011.10.21., 2019.1.7., 2019.3.5.)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학 석사(○○ 전공)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석사 전문학위를 수여함.

20○○.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위 ○ ○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번호: 서울시립대 (석)

석제 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2009. 02.13. 규정 제1009호
 2009. 07.16. 규정 제1034호
 2010. 02. 01. 규정 제1080호
 2010. 11. 17. 규정 제1129호
 2011. 01.20. 규정 제1164호
 2011. 03.11. 규정 제1182호
 2011.10. 21. 규정 제1227호
 2011. 12. 30. 규정 제1236호
 2012. 02. 24. 규정 제1241호
 2014. 04. 14. 규정 제1433호
 2014. 05. 29. 규정 제1444호
 2014. 07. 24. 규정 제1461호
 2015. 02. 26. 규정 제1502호
 2015. 11. 06. 규정 제1564호
 2018. 06. 08. 규정 제1754호
 2019. 01. 07. 규정 제1802호
 2019. 05. 20. 규정 제1828호
 2019. 12. 20. 규정 제1877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줄여 사용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 본교
2.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총장
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학원
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장 : 대학원장
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 학칙

제1편 위원회 등(개정 2010. 2. 1)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이 편외 각 위원회의 회의는 그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 편외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장 입학전형위원회

제4조(입학전형위원회의 임무) 학칙 제9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편입학 전형계획의 수립
2.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관리와 사정
3. 그 밖에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관여하지 못하며, 제3조제2항에서의 재적위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간사) 본 대학원 부원장은 위원회의 간사로서 회의의 실무를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개정 2014.4.14.)

제2장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8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임무) 학칙 제10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이 전형계획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여부
2. 입학 및 편입학 전형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입학 및 편입학 전형의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민원의 처리) ① 본 대학원의 입학 또는 편입학 전형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2주 내에 조사와 심의를 마친다.

③ 제8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원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2항의 조사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 제3조제2항에서의 재적위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장은 민원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제10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임무) 학칙 제11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2.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수립
3. 교육목표에 부합한 교과목의 개발
4. 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설치·운영
5. 교육과정 운영성과의 분석과 대책
6. 강의평가 및 교육방법 개선방안
7.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8. 학점교류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9. 다른 규정에 의해 위원회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협력요청) 학점의 인정 등 특정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위원장은 당해 전공분야 전임교원에게 의견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과정 또는 교육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교육과정연구위원회는 연구 종료 후 대학원장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자체평가위원회(신설 2009. 7. 16)

제15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학칙 제12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원 전임교수 및 본교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 전임교수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행정직원으로 보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자체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및 보고서의 작성
2. 자체평가를 위한 체제의 구축
3. 그 밖에 대학원 자체평가 또는 자기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12. 2.24)

제17조(자체평가보고서 등) ① 대학원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개정 2010.11.17, 개정 2012. 2.24)

② 대학원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체 없이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7)

③ 위원장은 자체평가 또는 본 평가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에는 평가의견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신설 2012. 2.24)

④ 전항의 점검을 한 경우, 위원장은 당해 학년도말까지 점검결과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12. 2.24)

제18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발전위원회(신설 2010. 2. 1)

제19조(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학칙 제12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및 동문 대표 등 외부 인사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행정직원으로 보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20조(발전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중기 및 장기 발전목표와 전략

2. 대학원 발전전략의 실행방안
3. 그 밖에 대학원 발전에 관한 사항

제21조(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보고) ① 위원장은 매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매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특성화위원회(신설 2010. 2. 1)

제23조(특성화위원회의 구성) ① 학칙 제12조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위원회 (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원 또는 특성화분야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행정직원으로 보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24조(특성화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의 특성화목표와 전략
2. 대학원 특성화전략의 실행방안
3. 그 밖에 대학원 특성화에 관한 사항

제25조(특성화평가보고서 등) 위원장은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 특성화전략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학생지도센터(개정 2010. 2. 1)

제27조(학생지도센터장) 학생지도센터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여 학생지도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학생지도센터의 업무) 학생지도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성 및 심리 검사·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심리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3. (삭제 2011.10.21)
4. 지도교수제도 및 튜터링제도의 운영·평가
5.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6. 기타 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제29조(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지도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지도센터장 이외의 위원은 학생지도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학생지도센터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센터의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의된 사항
- ⑥ 학생지도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상근직원) 센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생지도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둔다.

제31조(시간제 상담원 등) ①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비밀의 유지) ① 센터의 관계자는 학생에 관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학생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그 학생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계자는 단순한 통계작성의 목적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학생 관련정보를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성명, 학번, 주소 기타 이용학생 및 주변 인물이 특정될 수 있는 어떠한 표현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는 상담과 관련된 면접기록과 검사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지도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보관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8장 대외협력센터(신설 2010. 2. 1)

제33조(대외협력센터장) 대외협력센터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여 대외협력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4조(대외협력센터의 업무) 대외협력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습과정 및 해외연수의 운영
2. 실습과정 및 해외연수 참여학생의 선정, 지도와 평가
3. 실습과정 및 해외연수 협력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이행
4. 협력기관이 아닌 기관에서의 실습과정 이수 허가
5. 실무교육, 특성화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6.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알선, 정보제공 및 교육 (신설 2011.10.21)
7. 기타 대외협력 관련 업무(개정 2011.10.21)

제35조(대외협력센터 운영위원회) ① 대외협력센터에 대외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대외협력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외협력센터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외협력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며 대외협력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1. 대외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대외협력센터의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대외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의된 사항

제36조(상근직원) 대외협력센터에는 대외협력센터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둔다.

제9장 리걸클리닉센터(신설 2010. 2. 1, 개정 2011. 3. 11)

제37조(리걸클리닉센터장) 리걸클리닉센터장은 리걸클리닉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3.11)

제38조(리걸클리닉센터의 업무) 리걸클리닉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 3.11)

1. 학생들에게 실제사건의 상담과 처리를 경험하기 위한 임상과목 지도

2. 공익목적의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개발

3. 리걸클리닉 자문위원의 선정 및 지원(개정 2011. 3.11)

제39조(상근직원) 리걸클리닉센터에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3.11)

제2편 학사관리

제1장 수업

제40조(휴업일 등) ①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나 실습을 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정기 또는 임시휴업으로 인하여 수업일수에 미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당초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간) 충족 이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1. 6)

제41조(임의휴강의 금지) 교과목 담당교수는 임의로 휴강하지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세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수업계획서)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지한다.

② 제1항의 수업계획서에는 수업개요, 수업목표, 수업 및 평가방법, 교재, 주차별 수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업계획서는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4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② 학생은 수강신청 교과목을 전산입력한 후 출력한 수강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한다.(개정 2014. 5. 29)

③ 복학생과 편입생의 수강신청은 원칙적으로 매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한다.

제43조의2(필수과목의 수강시기) 전공필수과목 중 헌법Ⅰ·민법Ⅰ·민법Ⅱ·형법Ⅰ·형사소송법은 1학년 1학기에, 민법Ⅲ·민사소송법Ⅰ은 1학년 2학기에, 행정법Ⅰ·상법Ⅰ은 2학년 1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학년 학기에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사유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5.20.)

제43조의3(과목 수강의 순서) 전공선택과목 헌법Ⅱ, 민법Ⅳ, 형법Ⅱ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신설 2019.5.20.)

제44조(수강신청의 제한) ① 수강신청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수강학생의 수를 제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수강신청의 변경, 철회) ①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학기 개시일부터 5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의 철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수강학점이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에 미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16, 개정 2010. 2. 1)

제46조(수강신청 관련서류의 보존)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서류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보존한다.

제47조(교과목의 폐강)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인 선택과목은 이를 폐강한다. 다만, 대학원장은 과목의 특수성에 비추어 폐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48조(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 ① 실무수습에 수업료를 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2. 1)

② 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산입하되, 해당학기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최소한 한 학기를 등록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신설 2010. 2. 1)

③ 계절수업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취득학점은 성적이 확정된 이후 학적부에 “계절수업”으로 별도 기록하고 총 취득학점 및 총 성적 평점평균에 산입한다.(신설 2010. 2. 1)

제49조(출석부의 관리)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가 후 제출한다.

제50조(출석인정) 학생이 다음의 어느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부원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해당기간 동안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14)

1. 학생의 입원 및 치료 : 20일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기간
2. 삼촌 이내 친족의 사망 : 사망일부터 5일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10일의 범위 안에서 사유 존속기간

제51조(강의평가의 실시) ① 매학기 말 당해학기 수업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되, 학생의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강의평가에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강의평가의 항목, 배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2조(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① 강의평가의 결과는 평가대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며, 교원업적평가의 교육영역에 반영한다.

② 대학원장은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 세미나 등 개별적 또는 집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53조(종합시험의 실시와 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칙 제44조에 따른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9. 7.16, 2010. 2. 1, 2012. 2.24, 개정 2015. 2. 26)

1. 학칙 제45조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6분의 4 이상을 취득한 학생
2. 4학기 이상 제78조에 의한 지도학점을 취득한 학생
3. 학칙 제31조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부합하는 학생

② 수료생은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을 필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설 2019.1.7.)

③ 종합시험의 과목, 평가방법 및 시험의 실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5. 2. 26., 개정 2019.1.7.)

④ 제1항과 제2항의 종합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행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2.26., 개정 2019.1.7.)

제54조(학칙 제37조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개정 2009.7.16., 2010.2.1., 2019.12.20.) ① 학칙 제37조 제1항·제2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신청서의 제출을 받아 행하되, 학생은 입학 전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 신청자격, 신청과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합격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던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별도로 학점인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9., 2019.12.20.)

② 학점인정신청서에는 학생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사 이상의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그에 대응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교과목 명을 특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③ 학생은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 관한 학점 및 주당 강의시수, 성적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및 당해 교과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점인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그에 대응하는

교과목이 그 내용, 학점 및 주당 강의시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지 여부,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 본 대학원의 해당 교과목의 전공교수 중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교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⑤ 학점인정을 행함에 있어 본 대학원의 해당 교과목의 전공교수는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학생에 대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답안지와 평가결과를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9)

⑥ 학점인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미 이수한 특정 교과목 학점수의 일부만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수로 인정하거나, 이미 이수한 복수 교과목을 본 대학원 한 교과목에 대응시켜 복수 교과목의 학점수 합계 일부만을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⑦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특정 교과목의 평점은 합격(P)으로 처리한다.(개정 2011. 3.11)

⑧ 학점인정여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명, 학점인정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학생에게 통지한다.

⑨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의 학점 수는 학칙 제45조 제1호의 학점 수에는 포함되나, 학칙 제36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의 상한과 하한의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1)

⑩ 본 대학원에서 이미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55조(증명서) 학생 또는 학생이었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및 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재학증명서 : 재학 중인 학생
2. 재적증명서 : 재학하였던 사실이 있는 학생
3. 졸업증명서 : 졸업한 학생
4.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 학점취득으로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될 학생
5. 수료증명서 : 수료의 요건을 갖춘 학생
6. 성적증명서 : 학점을 취득한 학생
7. 기타 증명서 : 휴학증명서, 학적부 사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장학금 수혜 또는 미수혜 확인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제56조(증명서의 발급) ①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 ②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발급신청서의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자동증명발급기에 의해 할 수 있다.
- ③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사내규」 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성적의 처리

제57조(성적처리의 원칙) 성적의 처리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 등 관련규정과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8조(신분증의 소지 등) 시험에 참가하는 학생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녀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미응시, 별도시험 등) (개정 2009. 7.16, 개정 2010. 2. 1) ① 시험에 응하지 않은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0점으로 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예정이거나 응하지 못한 학생이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신청한 경우에는 부원장은 별도시험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성적의 평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4.14)

③ 제2항에 의한 별도시험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별도시험 또는 그 밖의 성적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부정행위) ①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F 등급으로 한다.

②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있는 경우 감독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대학원장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1조(성적의 등급, 평점평균) ①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B, C, D, F로 하고, 각 등급은 +(상), o(중), -(하)로 세분한다.(개정 2011. 3.11)

② 각 성적등급의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1)

등급	A ⁺	A ^o	A ⁻	B ⁺	B ^o	B ⁻	C ⁺	C ^o	C ⁻	D ⁺	D ^o	D ⁻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1.0	0.7	0

③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리걸클리닉 등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에는 학칙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P)/불합격(NP) 등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 3.11)

④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값의 합계를 수강학점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11. 3.11)

⑤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평점의 합계, 과목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성적순위를 정한다.(개정 2011. 3.11)

제62조(성적등급 부여방법) ① 성적등급의 부여는 필수과목(수강인원 10명 이상의 경우)은 [표1], 선택과목(수강인원 11명 이상의 경우, 단, 외국어 교과목 제외)은 [표2]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 3.11, 2011.10.21., 2014. 7.24, 개정 2015. 2. 26)

표1) 필수과목(수강인원 10명 이상의 경우)

구분	세부등급별 비율의 최고한도
A	A+ : 7%, A0 : 8%, A- : 10%
B	B+ : 15%, B0 : 20%, B- : 15%
C	C+ : 9%, C0 : 7%, C- : 9%
D	D : 4%

※ 어느 등급의 잔여 비율은 순차로 하위 등급에서 그 원래의 비율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표2) 선택과목(수강인원 11명 이상의 경우, 단, 외국어 교과목 제외)

구분	등급별 비율의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
A	최저 25%, 최고 35%
B	최저 35%, 최고 50%
C	최저 15%, 최고 40%
D	최저 0%, 최고 25%

※ A등급의 최고한도에 대한 잔여비율은 B등급에서 그 원래의 비율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성적등급 A와 B를 합하여 85%까지 부여할 수 있다.

※ 성적등급 A, B, C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필수과목의 성적등급의 부여는 다음 표의 등급별 인원배정에 따른다. 다만 등급별 인원은 해당등급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대인원을 말하며, 어느 등급의 잔여 인원은 순차로 하위 등급에서 그 원래의 인원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3.11., 2014. 7.24., 2015. 2. 26)

(단위: 명)

수강인원 \ 등급	A	B	C	D
9	2	5	2	
8	2	4	2	
7	2	4	1	
6	2	3	1	
5	1	3	1	
4	1	2	1	
3	1	1	1	
2	1	1		
1	1			

※ 성적등급 A, B, C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성적등급 A의 비율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7.24, 개정 2015.2.26)

④ 각 등급별 비율은 반올림으로 계산한다.(개정 2011.3.11, 2014.7.24, 개정 2015.2.26)

⑤ 제61조제3항이 적용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11, 2014.7.24, 개정 2015.2.26)

⑥ 대학원장은 교과목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제3항의 기준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2014.7.24)

제62조의2(성적등급의 환산)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신설 2011.3.11)

등급	점수	평점
A*	97 ~ 100	4.3
A°	94 ~ 96	4.0
A-	90 ~ 93	3.7
B*	87 ~ 89	3.3
B°	84 ~ 86	3.0
B-	80 ~ 83	2.7
C*	77 ~ 79	2.3
C°	74 ~ 76	2.0
C-	70 ~ 73	1.7
D	60 ~ 69	1.3
F	60점 미만	0
P	합격	
NP	불합격	

제63조(성적평가 관련자료)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학년도 말까지 답안지, 과제물, 평가지 등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제64조(성적평가자료의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가 종료한 후 정해진 기간에 성적을 전산입력하고 출석부, 성적평가표를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제65조(미비사항의 보완) 대학원장은 제63조에 따라 제출된 성적평가 자료에 다음과 같은 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교과목 담당교수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2010.2.1)

1. 출석요건, 성적분포 등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은 성적평가
2. 당해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성적평가
3. 그 밖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항

제66조(성적의 정정) 부여된 성적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평가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에게 성적정정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성적이의신청) 부여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평가내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성적확정 통보) 대학원장은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본교 교무처장에게 성적확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성적의 취소) ① 다음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부여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금을 내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이 부여된 경우(개정 2011.1.20)
2. 선수과목 등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한 학생에게 성적이 부여된 경우
3. 착오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성적이 부여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학원장은 본교 교무처장에게 성적취소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자료의 보관 등) ① 본 대학원 행정실은 제63조의 성적평가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개정 2009.7.16, 2010.2.1, 2014.4.14)

② 본교 교무처장은 학생의 성적표를 학적부에 첨부하여 관리한다.

제3편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 (개정 2009. 7. 16)

제1장 지도교수제도

제71조(지도교수제의 목적) 지도교수제는 학교생활, 학업 및 진로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충실한 지도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전인격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소양 및 전문적인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2조(지도교수제의 운영) ① 지도교수제는 학생지도센터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학기별 지도교수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3조(지도교수의 직무) ① 지도교수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도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학업 및 진로의 지도
 2. 학생지도활동의 기록 및 보고
 3. 지도학생에 대한 포상 내지 징계 시 관련 위원회에의 참석 및 의견개진
 4. 그 밖에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도교수는 매학기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학생 1인당 45분 이상 학생지도활동을 하여야 한다. 학생 1인당 지도시간에는 개인지도 시간뿐만 아니라 집단지도 시간도 포함된다.
- ③ 지도교수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생지도활동을 한다.
1. 학기 초 지도학생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2. 수강신청, 그 변경 및 철회에 대한 지도
 3. 지도학생이 법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의 추천
 4. 학기 말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
 5. 지도학생 상호간의 튜터링(tutoring) 및 멘토링(mentoring)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지도
 6. 휴·복학, 자퇴에 관한 상담과 지도
 7. 장학생의 추천
 8. 국내·외 외부연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지도
 9. 그 밖의 관련 상담 및 지도
- ④ 지도교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매월 학생지도계획서를 입력하고, 정해진 기간에 지도활동 내용을 학생지도활동기록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4조(지도교수의 위촉)(개정 2010. 2. 1) ① 학생지도센터장은 매 학년도 초 본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다만, 대학원장, 본 대학원 부원장, 학생지도센터장, 대외협력센터장,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주임교수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연구학기 내지 연구년 중인 전임교원은 신입생 및 편입생(이하 "입학생"이라 한다)의 지도교수의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4.14.)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학생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전공의 전임교원이 없고 학생의 진로 등의 지도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전공, 학문적 배경, 사회봉사활동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7.16)

③ 학생지도센터장은 지도교수가 질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 학기 이상 지도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도교수나 지도학생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75조(지도교수의 신청 및 선정)(개정 2010. 2. 1) (개정 2010. 2. 1) ① 입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의 선정을 신청한다.

② 입학생은 지도교수 신청기간에 지도교수 선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로서 진로,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학생은 희망지도교수 2인을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④ 학생지도센터장은 원칙적으로 학생이 신청한 희망지도교수 중에서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⑤ 제77조에 따른 지도학생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희망지도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지도센터장은 희망지도교수가 아닌 전임교원 또는 초빙 및 겸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7.16)

제76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② 학생지도센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도교수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지도학생수의 제한)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총수는 원칙적으로 10인을 넘지 못한다.

제78조(지도학생제 및 평가)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학생제를 신청하고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매학기 말 지도학생에 대하여 합격/불합격(Pass/Fail)의 평점을 부여한다.

제79조(학생지도활동과 초과강사료, 업적평가 등) ①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교원업적평가 및 재임용·승진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0조(학생지도활동에 대한 지원) 매학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에게 지도교수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지도교수평가제) ① 학생지도센터는 매학기 말 지도교수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도교수평가의 결과는 각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제82조(우수지도교수의 선정 및 포상) ① 총장은 매 학년도 말 학생지도센터장과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지도교수에 대해 포상한다.

② 우수지도교수로 선정된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권고, 지원 등) ① 학생지도센터장은 지도교수의 학생지도활동에 관하여 권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지도활동에 관하여 학생지도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장학금(신설 2009. 7. 16)

제84조(장학금의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3.11., 2018.6.8., 2019.12.20.)

제85조(장학금 신청 등) ① 대학원장은 매학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매학기 신청기간 중에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장학금 종류 및 신청사유 등을 입력하고 행정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학칙 제31조의 수업연한(6학기)이 경과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4.14., 2018.6.8.)

③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또는 취약계층장학 대상자 중 기혼자인 학생은 부모의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④ 장학금 신청학과와 그 직전학기의 소득구간이 변경됨으로써 장학금 수혜 여부가 달라지거나 장학금액의 변경이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⑤ 장학생(입학우수I포함)은 제2항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성적우수장학생은 예외로 하고, 원장장학생은 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개정 2018.6.8., 2019.5.20.)

⑥ 학업지원장학금의 비율은 장학금 지급총액 기준 80%를 한도로 한다.(개정 2015.11.6., 2019.5.20.)

⑦ 장학금 신청자가 학업지원장학금과 성적우수장학금 중에서 2종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때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 중 유리한 하나를 적용한다.(개정 2015.11.6., 2019.5.20.)

제86조(동점자 처리 기준 및 제외대상자) ①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학점이 많은 학생에게 우선 지급한다.(개정 2015.11. 6)

② 수업연한(6학기)을 초과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87조(장학금 지급 중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다만, 매월 지급하는 장학금은 휴학처리된 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1.12.30)

1. 미등록 휴학생 (개정 2011.12.30)
2. 징계처분 중인 학생
3. 직전 학기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제3장 포상 등(개정 2009. 7. 16)

제88조(포상의 종류, 부상) ① 학생에 대한 포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우수상 : 당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가장 높은 학생 및 최우수 졸업예정자(개정 2009. 7.16)
2. 학술상 : 전국규모의 논문현상모집 또는 공모전 등에서 입선 이상의 성적으로 수상한 학생
3. 공로상 : 학교의 발전이나 명예에 공로가 현저한 학생
4. 특별상 : 그 밖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② 포상받는 학생에게 상장 외에 적절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9조(포상의 상선) 지도교수 또는 본 대학원 전임교원은 사유를 들어 대학원장에게 포상대상 학생으로 추천할 것을 상신할 수 있다.

제90조(포상의 기록) 포상의 사실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91조(표창) ① 대학원장은 학생의 학업 정진을 권장하기 위하여 학업우수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09. 7.16)

② 표창 받는 학생에게는 표창장 이외에 적절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9. 7.16)

제4장 징계

제92조(징계의 내용)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30시간 이내의 정해진 시간 동안의 봉사 활동
2. 근신 : 수업 등 활동이 금지되며, 7일(1일 8시간 한도) 이내의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의 봉사활동
3. 유기정학 : 28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4. 무기정학 : 29일 이상 해제될 때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 정지
5. 퇴학 : 학생의 지위 상실

제93조(징계절차 개시의 요구) ① 본교 전임교원 및 교내 모든 단위부서의 장(5급 이상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생에 대해 대학원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4조(징계심의 회부) ① 제93조에 따른 징계절차 개시의 요구를 받은 대학원장은 해당 학생을 학칙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9. 7.16)

② 징계심의회 회부된 학생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심의회 회부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학생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지며, 서면으로도 소명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회 회부된 학생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

제9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퇴학이 의결된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6조(징계의 통보, 기록) ① 운영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퇴학의 의결에 대한 총장의 승인이 있으면, 대학원장은 징계대상 학생에게 지체 없이 징계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징계사실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97조(징계의 해제) ① 교내봉사, 근신, 유기정학은 정해진 징계내용의 이행 또는 정해진 징계기간의 경과로 해제된다.

② 무기정학은 징계개시 후 29일 이상이 경과한 후 대학원장이 징계대상자의 징계후의 품행 등을 참작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해제가 있으면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징계대상 학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4편 보칙

제1장 연구과정

제98조(연구과정의 종류) ①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으로 조세법 일반연구과정, 조세법 전문가연구과정 및 도시관련법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조세법 일반연구과정은 법학전공자로서 조세법 분야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설치·운영된다.

③ 조세법 전문가연구과정은 조세법전공자 또는 조세실무자로서 심도 있는 조세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설치·운영된다.

④ 도시관련법 연구과정은 법학전공자 또는 도시관련분야 종사자로서 도시관련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과정으로 설치·운영된다.

제99조(주임교수, 전담교수 등) ① 본 대학원에 연구과정의 운영 전반을 담당할 연구과정 주임교수를 둔다.

- ②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과정마다 각 연구과정을 담당할 연구과정별 전담교수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연구과정 주임교수 및 연구과정별 전담교수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각 연구과정에 연구과정 학생(이하 이 장에서 “연구생”이라 한다)의 연구와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00조(연구과정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과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과정 주임교수가 되며, 위원은 연구과정별 전담교수와 본 대학원 또는 세무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연구과정의 연구프로그램 및 교과목
 2. 연구과정 입학전형 방법
 3. 연구생의 연구 및 활동 지원
 4. 그 밖에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1조(연구기간 등) ① 각 연구과정의 기간은 6월(1학기) 또는 1년(2학기)으로 한다.

② 각 연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각 연구과정의 교과목은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02조(연구과정의 수료) ① 각 연구과정의 수료요건에 관하여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각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명서를 수여한다.

제2장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

제103조(인증요건) ① 본 대학원에 개설된 조세법 과목 중 제2항제1호의 인증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각 과목의 평점이 3.0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을 위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필수과목 : 세법기본이론, 소득세법
2. 인증 선택과목 : 조세국가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기초,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금융세법, 상급법인세법, 조세법연습, 회계학,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axation, 국제조세법
- ③ 특성화위원장은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에 요구되는 교과목 및 수료요건 등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4조(인증서 수여) ① 운영위원회는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요건을 충족한 학생의 신청을 받아, 졸업학기 최종성적이 확정된 후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 수여여부를 심의한다.

② 본 대학원은 제1항의 심의에 따라 별표 2의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3장 업무분장(개정 2019. 12. 20)

제105조(적용범위) 본 대학원 행정실(이하 이 장에서 “행정실”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4.14., 2019.12.20.)

제106조(관련업무의 담당) 둘 이상의 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는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하며, 비중이 동일하거나 담당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07조(담당직원) ① 행정실에 교무, 학생,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 또는 조교를 둔다. (개정 2010.2.1., 2014.4.14., 2019.12.20.)

② 행정실에 박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4.14., 2019.12.20.)

제108조(교무담당) 교무담당 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20.)

1. 교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업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입학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교안개발 및 교육방법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지원 및 진흥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교육·연구용 기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소모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문서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제109조(학생담당) 학생담당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20.)

1. 학생지원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
4. 학생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6. 학생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

제110조(서무담당) 서무담당 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12.20.)

1. 행정업무의 관리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지출에 관한 사항
3. 학생지원센터의 지출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6.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7.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개정 2010. 2. 1)
8.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개정 2010. 2. 1)
9. 보도자료 작성(개정 2010. 2. 1)
10. 기념품 제작 및 관리(개정 2010. 2. 1)
11. 대학원 홍보물(개정 2010. 2. 1)
1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

부 칙(2009. 2. 13)

이 시행세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6)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개설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1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이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2011. 10. 21)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50조, 제59조 제2항, 제64조, 제70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103조, 제105조 제1항, 같은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 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24)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하며,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5. 11. 6)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제1학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부터 적용하며,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성적우수장학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 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3조의3의 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12. 20.)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09.7.16, 개정 2011.3.11., 2015.2.26., 2015.11.6., 2018.6.8., 2019.12.20.)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의 종류와 내용(제84조 관련)

장학구분	명칭	수혜자격	지급대상	수혜내용	세부사항
학업지원 장학	특별전형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신입생 재학생	A	· 재학 중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수업연한 동안 지급 · 장애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소득을 초과하는 학생은 제외
	기회균등 I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재학생	A, B, C	· 장학금 신청시 지도교수의 추천서 첨부 · 수혜금액별 인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회균등 II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	신입생 재학생	A, B	· 수혜금액별 인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성적우수 장학	입학우수 I	· 입학전형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	신입생 재학생	A	·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3 이상인 경우 수업연한 동안 지급 · 수업연한내(6학기) 최소 5시간 이상 공익활동 연계프로그램 이수
	입학우수 II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일반전형 신입생	신입생	A	· 최초 합격자의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함
	입학우수 III	입학성적이 우수한 일반전형 신입생 중 일정인원	신입생	B, C	· 수혜금액별 인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성적우수 I	· 직전학기 평점평균 수석 학생	재학생	A	· 수업연한내(6학기) 최소 5시간 이상 공익활동 연계프로그램 이수
	성적우수 II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 중 일정인원	재학생	A, B, C	· 수혜금액별 인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수업연한내(6학기) 최소 5시간 이상 공익활동 연계프로그램 이수
원장장학	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한 학생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재학생	A, B	· 추천대상자 1명(반액인 경우 2명)	
해외연계 프로그램 장학	교내 해외연계 프로그램 참여자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대외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센터장 추천	재학생	일정액		
튜터장학	신입생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튜터로 활동하는 학생 중 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센터장 추천	재학생	일정액		
장애인도움장학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 중 학생지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심의하여 센터장 추천	재학생	D		
연구장학	교수의 연구 및 강의를 보조하는 학생		일정액	· 경제적 사정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수가 선정	
연구비 장학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일정액		

* A: 수업료 전액(입학금포함), B: 수업료 반액(10,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C: 수업료의 20%(10,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D: 활동시간비례지급

[별표 2]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신설 2019.12.20.)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조세법 전문과정 인증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전문인증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20○○.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 ○

제 호

[별지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법학전문대학원)

신청자	학 과		학 기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 종류	() 장학금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 령	직 업	비 고	
신청사유						
기 타	가족수			명	※ 기타란은 특별장학금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원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원		
	재산세 과세 증명			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20 학년도 제 학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귀하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표 (2019.12.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표 참조

연번	대상 학년	개설 학기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전공	필수 선택	기본 심화	외국어 강의
1	1	1	LS051	법률정보의조사(P/F)	1	1	실무	필수		
2	1	1	LS957	헌법 I	3	3	헌법	필수	기본	
3	1	1	LS958	민법 I	3	3	민법	필수	기본	
4	1	1	LS959	형법 I	3	3	형법	필수	기본	
5	1	1	LS960	민법 II	3	3	민법	필수	기본	
6	1	1	LS961	형사소송법	3	3	형소법	필수	기본	
7	1	1	LS001	법조윤리(P/F)	2	3	실무	필수		
8	1	1	LS043	법경제학	2	2	기초-인접법	선택	기본	
9	1	1	LS932	Law in Popular Culture	2	2	기초법	선택		영어
10	1	1	LS812	현대국제법의 쟁점과 사례	3	3	국제법	선택	기본	
11	1	2	LS962	민법 III	3	3	민법	필수	기본	
12	1	2	LS371	민사소송법 I	3	3	민소법	필수	기본	
13	1 2	2 1	LS061	법문서의 작성(P/F)	2	3	실무	필수	기본	
14	1	2	LS963	헌법 II	3	3	헌법	선택	기본	
15	1	2	LS964	민법 IV	3	3	민법	선택	기본	
16	1	2	LS956	Understanding of Global Competition Law(글로벌경쟁법의이해)	3	3	경제법	선택	전심	영어
17	1	2	LS838	한국-미국/EU 자유무역협정	2	2	국제법	선택	전심	
18	1	2	LS814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국제기구법)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영어
19	1	2	LS031	법제사	2	2	기초-인접법	선택	기본	
20	1	2	LS041	법사회학	2	2	기초-인접법	선택	기본	
21	1	2	LS511	근로조건과 법	3	3	노동법	선택	기본	
22	1	2	LS601	세법기본이론	3	3	세법	선택	기본	
23	1	2	LS973	회계학과 세법	3	3	세법	선택	전심	
24	1	2	LS965	형법 II	3	3	형법	선택	기본	
25	2	1	LS966	상법 I	3	3	상법	필수	기본	
26	2	1	LS967	행정법 I	3	3	행정법	필수	기본	
27	2	1	LS011	법철학	2	2	기초-인접법	선택	기본	

연번	대상 학년	개설 학기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전공	필수 선택	기본 심화	외국어 강의
28	2	1	LS821	해양法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일어
29	2	1	LS822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국제해양법)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영어
30	2	1	LS831	국제경제법	3	3	국제법	선택	기본	
31	2	1	LS513	고용차별과 법(격년)	3	3	노동법	선택	전심	
32	2	1	LS521	노동단체법	3	3	노동법	선택	기본	
33	2	1	LS921	여성과 법(격년)	3	3	노동법/형사정책	선택	전심	
34	2	1	LS882	정신장애와 법	3	3	민법	선택	전심	
35	2	1	LS373	민사소송법 II	3	3	민소법	선택	전심	
36	2	1	LS417	US Corporate Law	3	3	상법	선택	전심	영어
37	2	1	LS461	은행법	3	3	상법	선택	전심	
38	2	1	LS482	Commercial Law & Common Law at HK	3	3	상법	선택	전심	영어
39	2	1	LS6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3	세법	선택	전심	
40	2	1	LS613	소득세법	3	3	세법	선택	전심	
41	2	1	LS661	특허법	3	3	지재법	선택	전심	
42	2	1	LS662	Patent Law(격년)(특허법)	3	3	지재법	선택	전심	영어
43	2	1	LS186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	3	헌법	선택	심화	영어
44	2	1	LS968	형법 III	3	3	형법	선택	전심	
45	2	1	LS743	형사소송법쟁점연구	3	3	형소법	선택	전심	
46	2	1	LS969	민법 V	3	3	민법	선택	기본	
47	2	1	LS115	조세국가론	3	3	세법/헌법	선택	전심	
48	2	2	LS953	형사증거법	3	3	형법/형소법	선택	전심	
49	2	2	LS863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인권의 국제적 보호)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영어
50	2	2	LS974	법인세법	3	3	세법	필수	전심	
51	2	2	LS970	상법 II	3	3	상법	선택	기본	
52	2	2	LS971	행정법 II	3	3	행정법	선택	기본	
53	2	2	LS092	실습과정2(P/F)	1	1	실무	선택		
54	2	2	LS021	법사상사	2	2	기초-인접법	선택	기본	
55	2	2	LS865	Trade Remedy Laws(무역구제법)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영어
56	2	2	LS832	International Trade and WTO Law(국제통상과WTO법)	3	3	국제법	선택	기본	영어

연번	대상 학년	개설 학기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전공	필수 선택	기본 심화	외국어 강의
57	2	2	LS955	민법사례연구1	3	3	민법	선택	전심	
58	2	2	LS071	요건사실론	3	3	민소법	선택	전심	
59	2	2	LS541	사회보장법	3	3	사회보장법	선택	기본	
60	2	2	LS463	증권규제법	3	3	상법	선택	전심	
61	2	2	LS483	국제거래법(격년)	3	3	상법	선택	전심	
62	2	2	LS871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격년)	3	3	상법	선택	전심	영어
63	2	2	LS618	부가가치세법	3	3	세법	선택	전심	
64	2	2	LS647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Taxation(국제조세입문)(격년)	3	3	세법	선택	전심	영어
65	2	2	LS972	국제조세법(격년)	3	3	세법	선택	전심	
66	2	2	LS097	검찰실무1	3	3	실무	선택		
67	2	2	LS098	형사재판실무	3	3	실무	선택		
68	2	2	LS794	경찰실무	3	3	실무	선택		
69	2	2	LS652	Intellectual Property Law(격년)(지적재산권법)	3	3	지재법	선택	기본	영어
70	2	2	LS671	저작권법	3	3	지재법	선택	전심	
71	2	2	LS241	환경법	3	3	행정법	선택	전심	
72	2	2	LS291	규제행정법	3	3	행정법	선택		
73	2	2	LS187	American Constitutional Case Law Study	3	3	헌법	선택	심화	영어
74	2	2	LS189	헌법의 쟁점	3	3	헌법	선택		
75	2	2	LS717	형사정책과 형사입법론	3	3	형사법	선택		
76	2	2	LS091	실습과정1(P/F)	1	1	실무	선택		
77	3	1	LS081	모의재판(P/F)	1	1	실무	선택		
78	3	1,2	LS093	실습과정3(P/F)	1	1	실무	선택		
79	3	1	LS931	문화예술과 법	2	2	기초법	선택	기본	
80	3	1	LS864	The La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영어
81	3	1	LS544	노동쟁송연구	3	3	노동법	선택	전심	
82	3	1	LS951	일본법연구	3	3	노동법	선택	전심	일어
83	3	1	LS952	민법사례연구2	3	3	민법	선택	전심	
84	3	1	LS383	민사소송법사례연구	3	3	민소법	선택	전심	
85	3	1	LS481	상법사례연구	3	3	상법	선택	전심	

연번	대상 학년	개설 학기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전공	필수 선택	기본 심화	외국어 강의
86	3	1	LS975	부동산과 세법	3	3	세법	선택	전심	
87	3	1	LS977	기업구조조정과 세법	3	3	세법/상법	선택	전심	
88	3	1	LS099	검찰실무2	3	3	실무	선택		
89	3	1	LS100	민사재판실무	3	3	실무	선택		
90	3	1	LS391	민사실무	3	3	실무	선택		
91	3	1	LS791	형사실무	3	3	실무	선택		
92	3	1	LS651	지적재산권법(격년)	3	3	지재법	선택	기본	
93	3	1	LS281	행정법사례연구	3	3	행정법	선택	전심	
94	3	1	LS181	헌법사례연구	3	3	헌법	선택	전심	
95	3	1	LS188	헌법판례와 이론	3	3	헌법	선택		
96	3	1	LS781	형법사례연구	3	3	형법	필수	전심	
97	3	2	LS976	금융과 세법	3	3	세법	선택	전심	
98	3	2	LS911	남북한 법질서와 통일법	2	2	기초·인접법	선택	기본	
99	3	2	LS862	人權の國際的保護	3	3	국제법	선택	전심	일어
100	3	2	LS514	雇傭差別と法(격년)	3	3	노동법	선택	전심	일어
101	3	2	LS551	노동법사례연구	3	3	노동법	선택	전심	
102	3	2	LS573	소비자보호법	3	3	민법/경제법	선택	전심	
103	3	2	LS395	민사법종합연습	3	3	민법/민소법/상법	선택		
104	3	2	LS423	도산법	3	3	민소법	선택	전심	
105	3	2	LS546	高齡社會と法(격년)	3	3	사회보장법	선택	전심	일어
106	3	2	LS415	M&A법	3	3	상법	선택	전심	
107	3	2	LS644	조세법연습	3	3	세법	선택	전심	
108	3	2	LS793	범죄대책실무	3	3	실무	선택	전심	
109	3	2	LS663	Science, Technology and Law(격년)(과학기술과법)	3	3	지재법	선택	전심	영어
110	3	2	LS251	정보공법	3	3	행정법	선택	전심	
111	3	2	LS185	공법종합연습	3	3	헌법/행정법	선택		
112	3	2	LS785	형사법종합연습	3	3	형법/형소법	선택		
113	3	2	LS783	형사소송법사례연구	3	3	형소법	선택	전심	
114	3	1,2	LS096	리걸클리닉(P/F)	3	3	실무	선택		

행정실

운영방침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행정 지원부서로서 각 담당자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함

< 행정실의 주요 업무 >

서무 담당

- 일반서무 업무
- 교수 인사
- 교직원 복리
- 각종 학과 행사
- 직원 인사
- 재무회계
- 물품관리
- 공간관리

학생 담당

- 교육과정
- 수업업무
- 시간강사 관리
- 시험 및 성적관리
- 강의실 일반 관리
- 학적관리
- 학생(활동) 지원
- 규정 관리
- 졸업

교무 담당

- 입시 업무
- 교수 연구지원
- 자료관리
- 통계작성
- 로스쿨 평가
- 유관기관 협력
- 홈페이지 관리
- 인쇄물 제작

학생지도센터

설립목적

학생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을 돕고 사회진출 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심리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업지도 등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

< 학생지도센터의 주요 지도 프로그램 >



진로 및 심리상담

- 진로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교생활 및 심리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 정신건강 관련 특강 및 심포지엄 개최
- 수시 개인 심리 상담



생활지도 프로그램

- 신입생의 학교생활 안내를 위한 선후배간 1:1 생활 멘토링 매칭·운영
- 성차별 관련 상담 및 실태조사
- 장애학생상담, 고충사항접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인권센터와 연계)
- 장애학생들 상호간의 만남과 모임 주선



지도교수 제도 운영

- 지도교수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성과의 평가와 보고
- 지도교수의 위촉, 교체, 선정 및 변경
- 지도교수의 지도활동과 연계 및 지원
- 지도교수 평가제의 운영
- 지도교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재학생간 튜터링 제도 지원·운영
- 졸업생 선배와 연계한 튜터링 지원·운영
-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실시·운영
-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공 관련 특강 실시

대외협력센터

설립목적

-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훈련을 위한 실습과정 운영
- 해외 연수 프로그램, 기타 대외협력 관련 업무를 지원
- 취업 관련 정보 제공, 통계 지원

< 대외협력센터의 주요업무 >

실습과정 과목 운영

- 운영목적: 임상실습, 사회봉사 그리고 특성화 분야에 대한 실습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직업 탐색
- 국내외 30여개의 기관에 하계 혹은 동계 방학을 이용해 과정을 수료하며, 교내 수업 참석 및 보고서를 제출 시 학점 인정

해외연계교육프로그램 운영

- 운영목적: 학생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화된 법률가 양성
- 해외교육기관(상해대학교 수도대학동경 홍콩대학교 스페인 카를로스3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현지 교육과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실습과목 일본법연구 Commercial Law & Common Law at HK 국제인권법 Patent Law 글로벌경쟁법)이 상호 연계되어 수업을 진행할 장학금 지원관계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발과정을 거치며(인원초과 지원 시), 하계 및 동계 방학을 이용한 해외 수업(1주 전후) 및 이어지는 다음 학기 교내 수업(8주)과 연관하여 진행됨
- 프로그램 내용: 외국 및 국내에서 관련법에 대한 강의 과제 발표 수업, 관련 기관 방문 등

취업 및 기타 지원

취업 클리닉: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졸업전후 취업을 위해 예비 법조인으로써 도움이 될 만한 해당 분야에 대한 직업적 특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조건인 기본 소양 등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청취 학습할 수 있는 특강 지원

리걸클리닉센터

설립목적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임상법학(리걸클리닉)과목 운영,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공익적 연구 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함

< 리걸클리닉센터의 주요업무 >

임상법학(리걸클리닉)과목 운영 및 지원

- 매 학기 개설되는 임상법학(리걸클리닉)과목 운영 관련 지원 활동
- 선수과목 이수 규정 (법률정보의 조사, 법조윤리, 민법 I, 민법 II, 헌법 I, 행정법 I, 형법 I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무료법률상담

-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지원함
-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률지원팀이 함께 학내외 구성원들의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내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지원함

변호사연계 공익소송 실무

-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률지원팀이 함께 실제 공익적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송무사건을 검토하여 지원함

비영리 공익 목적의 법률연구사업

- 자료집 발간 및 기타 관련 법률 연구 활동(공익적 법률구조 및 연구사업)

각종 법률단체와 사회단체와의 연계 지원

법학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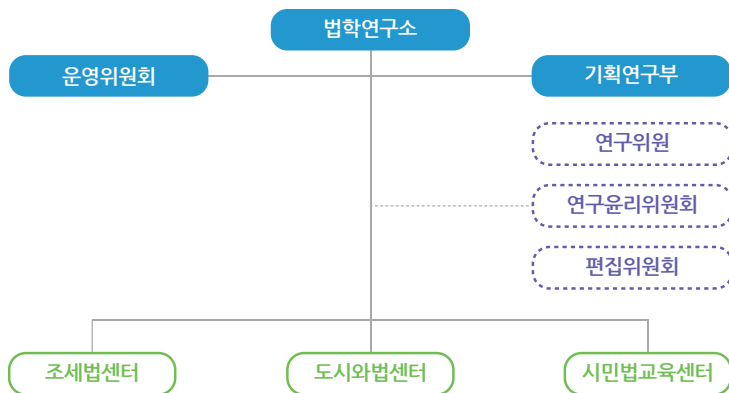
1. 설립목적

- 법에 관한 국내 · 외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보급함
-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민법 교육을 통해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
- 조세법 및 조세정책 · 조세실무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조세체계의 구축을 뒷받침 함.

2. 연구소의 역할

- 가.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 나. 학술지의 발간
- 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라.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의 수행
- 마. 법학전문대학원소속교원의 학술 · 연구활동의 지원

3. 조직 및 구성



4. 주요실적

가. 학술행사 개최

- 2016. 01. 27. 법학연구소 / (사)한국비고노동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최근 노동법의 동향」
- 2016. 01. 28. 법학연구소 동계학술대회 「최근 법학의 이론적 전개」
- 2016. 02. 01. 법학연구소 / 독일민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독일민법 입법이유서의 학술적 평가」
- 2016. 02. 02. ~ 03. 법학연구소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현대 제정법의 쟁점 및 과제와 전망」
- 2016. 02. 16. 법학연구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법학의 현대적 쟁점」
- 2016. 02. 18. 법학연구소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헌법과 법률의 올바른 관계 정립 방안」
- 2016. 02. 23. ~ 24. 법학연구소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중·일의 법제비교연구」
- 2016. 04. 28. 법학연구소/국제조세협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
- 2016. 05. 13. 법학연구소 주최 2016 조세법 학술대회
- 2016. 05. 20. 법학연구소/채무자회생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
- 2016. 05. 27. 법학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현대법학의 과제」
- 2016. 06. 11. 법학연구소 주최 2016 서울법학 하계학술대회 「지방분권의 각국 법제 현황」
- 2016. 06. 27. 법학연구소/한국부패학회/감사연구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반부패를 위한 감사원 감사제도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법적 과제」
- 2016. 08. 17. 법학연구소 / 한국소비자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2016년 소비자 정책 세미나 -소비자 안전 이슈와 전망-」
- 2016. 09. 23. 법학연구소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입법 과제」
- 2016. 10. 14. 법학연구소 / 헌법재판연구원 / 한국공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60년과 헌법재판」
- 2016. 10. 28. 법학연구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법학의 현대적 쟁점」
- 2016. 11. 12. 법학연구소 / 한국 국제 조세협회 공동주최 추계 국제 학술대회 「신 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및 세제개편 방안」
- 2016. 11. 18. 법학연구소 / 한국교육법학회 공동주최 추계 학술대회 「지방교육자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2016. 12. 26. 법학연구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주최 학술대회 「현대사회의 법적 현안」
- 2017. 04. 14. 법학연구소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춘계 공동주최 학술대회 「국제조세 대법원 판례와 OECD BEPS」
- 2017. 05. 19. 법학연구소 / (사)한국헌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정기관계법 30년 평가와 전망: 선거와 정당 제도」
- 2017. 09. 16. 법학연구소 /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행정입법과 의료 사회복지

- 법제의 최근 동향」
- 2017. 09. 23. 법학연구소 / 한불민사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 「프랑스 개정 채권법」
 - 2017. 10. 14. 법학연구소 / (사)한국부동산법학회 추계 공동주최 학술대회 :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법적과제」
 - 2017. 11. 10. 법학연구소 / (사)한국경제법학회 추계 공동주최 학술대회 : 「최근 P2P금융법제의 동향과 법적과제」
 - 2017. 11. 10. 법학연구소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추계 공동주최 학술대회 : 「통일시대의 사회보장」
 - 2017. 12. 09. 법학연구소 /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동계 공동주최 학술대회 : 「민사문제의 헌법적 쟁점」
 - 2017. 12. 14. 법학연구소 / 헌정사연구회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 「미군정 사법부 법률고문과 제헌헌법 - 우돌, 퍼글러, 프랭켈 -」
 - 2018. 02. 02. 법학연구소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 「지방분권운동의 과거와 현재」
 - 2018. 02. 05. 법학연구소 / 한국법사학회 로마법연구회 공동학술세미나 : 「최근 로마법 연구의 현황」
 - 2018. 02. 08. 법학연구소 기획세미나 : 「헌법 개정의 동향과 전망」
 - 2018. 04. 28. 법학연구소 / (사)한국민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신진학자 및 자유주제 발표」
 - 2018. 06. 28. 법학연구소 / (사)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공정거래규제의 실효성」 끝.
 - 2018. 07. 07. 법학연구소 /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 「토지, 건축, 도시개발과 행정법」
 - 2018. 07. 13. 법학연구소 / (사)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선거법의 최근 이슈들」
 - 2018. 08. 24. 법학연구소 / 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 : 「행정조정의 법제도적 발전방향」
 - 2018. 09. 15. 법학연구소 / 한국상속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상속의 현안과제」
 - 2019. 01. 10. 법학연구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공법(公法)의 현안과 쟁점」
 - 2019. 01. 19. 법학연구소 /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 「공무원의 기본권」
 - 2019. 01. 31. 법학연구소 / 한국법사학회 로마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 「한국 로마법학의 연구 동향」
 - 2019. 02. 15. 법학연구소 / (사)한국비교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사회변화와 단체(법인)의 법리」
 - 2019. 06. 14. 법학연구소 / (사)한국규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신산업의 도입에 따른 규제법제의 과제」
 - 2019. 10. 25. 법학연구소 / 한국지방세학회 공동학술대회 : 「지방세와 행정법」
 - 2019. 12. 13. 법학연구소 / (사)한국공법학회 / 법제처 / 헌법재판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 2019. 12. 14. 법학연구소 / (사)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법무법인 박 앤 정 공동학술대회 :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
 - 2020. 01. 11. 법학연구소 /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위험사회에서 헌법의 기능」

나. 학술지 발간

- 2016. 02. 서울法學 제23권 제3호
- 2016. 05. 서울法學 제24권 제1호
- 2016. 06. 租稅와法 제9권 제1호
- 2016. 08. 서울法學 제24권 제2호

- 2016. 11. 서울法學 제24권 제3호
- 2016. 12. 租稅와法 제9권 제2호
- 2017. 02. 서울法學 제24권 제4호
- 2017. 05. 서울法學 제25권 제1호
- 2017. 06. 租稅와法 제10권 제1호
- 2017. 08. 서울法學 제25권 제2호
- 2017. 11. 서울法學 제25권 제3호
- 2017. 12. 租稅와法 제10권 제2호
- 2018. 02. 서울法學 제25권 제4호
- 2018. 05. 서울法學 제26권 제1호
- 2018. 06. 租稅와法 제11권 제1호
- 2018. 08. 서울法學 제26권 제2호
- 2018. 11. 서울法學 제26권 제3호
- 2018. 12. 租稅와法 제11권 제2호
- 2019. 02. 서울法學 제26권 제4호
- 2019. 05. 서울法學 제27권 제1호
- 2019. 06. 租稅와法 제12권 제1호
- 2019. 08. 서울法學 제27권 제2호
- 2019. 11. 서울法學 제27권 제3호
- 2019. 12. 租稅와法 제12권 제2호
- 2020. 02. 서울法學 제27권 제4호

다. 『도시와 법』포럼 운영

- 도시 재생 현상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이론적 고찰(2016.4.20)
- 도시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공공광장의 설계요소 양상에 따른 이용자의 행태 및 평가에 대한 연구 (2016.4.20)
- 우리나라의 식품안전(2016.11.16.)
- 소비자 특별법의 이해(2016.11.16.)
- 도시재생사업 문제(2017.11.14.)
-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방안(2017.01.31.)
- 도시와 물 -고대 도시 로마를 중심으로- (2017.01.31.)
- 개발제한구역제도의 21세기적 변용과 법적 대응 (2018.12.18.)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개념 (2020.01.22.)
-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도시계획법제의 대응 (2020.01.22.)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및 법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 강의지원, 법률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월 법학관 건물 4~6층에 자료실과 대학원열람실, 정보검색 시설을 갖춘 분관으로 설치되었다.

1. 장서현황

구분	총류 (000)	철학 (100)	종교 (200)	사회 과학 (300)	순수 과학 (400)	기술 과학 (500)	예술 (600)	언어 (700)	문학 (800)	역사 (900)	기타	합계
국내서	17	10	1	69,673	5	354	16	25	34	36	25	70,196
국외서	11	4	0	40,554	19	173	22	3	7	19	37	40,849
총장서	111,045											

※ 2020년 4월 1일 기준(단위 : 권)

2. 주요시설

위치	실별	서비스내용
법학관 4층	법학라운지	- 그룹스터디룸 24석
		- 전용 자습 및 휴게시설
		- 인터넷 검색 및 노트북 코너 26석
법학관 5층	대학원열람실	- 90석 규모의 일반열람실 공간
	정보검색실	- 24석 규모의 학술정보검색
	보존서고	- 법학 관련 보존서고
법학관 6층	법학자료실	- 소장자료: 법학분야 국내외 단행본, 참고도서, 학위논문, 국내외 법학 정기간행물 등
		- 자료의 대출/반납, 예약도서서비스
		- 열람석 80석, 검색시설 11석
		-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자료 원문검색 및 출력 가능

3. 법학전문도서관 이용 안내

1) 개관시간

법학관	위치(층)	열람석(총255)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법학자료실	6	91	학기 중 9:00~21:00	학기 중 9:00~13:00	휴관
			방학 중 9:00~18:00	방학 중 휴관	
대학원열람실	5	90	6:00~23:00 (연중무휴)		
정보검색실	5	24			
법학라운지	4	50	6:00~23:00 (일요일/공휴일 휴실)		

2) 자료열람실 이용

- 법학분야의 국내외 단행본 및 참고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이용가능
- 4개국 10종의 법학 관련 WEB-DB 제공
- 법학전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법학분야 전자정보 및 도서대출·연장·예약 등 기타 서비스 이용 가능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계)
- 법학전문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검색결과 소장처/자료실이 '법학 전문도서관'으로 표기된 자료에 한 경우에 한하여 관내열람 및 자료대출 가능
- 법학전문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도서관에 직접반납 또는 무인반납기를 통한 무인반납

캠퍼스 안내

넓고 푸른 친환경 캠퍼스에서
세계의 기분을 가슴에 담다



- | | | | |
|------------|-----------|--------------|------------|
| 1 전농관 | 2 제 1공학관 | 3 건설공학관 | 4 창공관 |
| 5 인문학관 | 6 배봉관 | 7 대학본부 | 8 자연과학관 |
| 10 경농관 | 11 제 2공학관 | 12 학생회관 | 13 학군단 |
| 14 과학기술관 | 15 21세기관 | 16 조형관 | 18 자작마루 |
| 19 정보기술관 | 21 중앙도서관 | 22 생활관 | 23 건축구조실험동 |
| 24 토목구조실험동 | 25 미디어관 | 27 대강당 | 28 운동장 |
| 29 박물관 | 32 웰니스센터 | 33 미래관 | 34 국제학사 |
| 35 음악관 | 36 어린이집 | 37 100주년 기념관 | 41 실외테니스장 |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법학관 533호
Tel. 02-6490-5068~70 Fax. 02-6490-5072 <http://lawschool.uos.ac.kr>